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 홍석준 · 추경호 · 송석준

김정재 · 김용판 · 이헌승

강대식 • 배현진 • 이철규

박성중 • 윤재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

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 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 6항).
- 다.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호마목1) 및 2) 중 "7년간"을 각각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수</u>)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	
이 <u>10년</u> 이상 계속하여 경영	- <u>5년</u>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 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u>10년</u>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 다. (생략)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가 <u>5년</u>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u>5년</u>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
 - 다. 라. (생 략)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정 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 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

		-
		-
		-
		-
1.		-
		_
	가	-
	<u>50</u>	-
	<u>55</u>	
		-
	나	-
	경우	
		_
	(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	-
	하지 아니한다)	
	다.•라. (현행과 같음)	
	마	_
	1)	-
		-
	513 7h	
	<u>5년간</u>	-
		-
		-

2)	상속여	기기	위시	린 /	소득	세
과	네기간	말	또는	- Ì	법인	세
사	법연도	말부	터	<u>7년</u> 2	간	총
급여	겨액의	전기	刹 2	형균	0]	기
준	총급여	액에	י [ם	달하	느	경
우						

		~ .
\circ	(생	랴
	(/)!	4
4.	\ \	-

⑦ ~ ⑪ (생 략)

2)	
	<u>5년간</u>

- 2. (현행과 같음)
- ⑦ ~ ⑪ (현행과 같음)